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8

발의연월일: 2021. 4. 22.

발 의 자:이헌승・金炳旭・최형두

김도읍・서병수・김정재

이주화 · 이양수 · 박성민

송석준·하영제·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되어 12년째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3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유지가 실질적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 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u>6억원</u> 을 공제(납세의무	1 <u>12억원</u>
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	
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